

2024년도 영양보호사 신규자격증 발급 신청 변경 안내

2024. 1.



국민이 신뢰하고 감동하는 시험평가기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KOREA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INSTITUTE

목 차

I. 자격증 발급 개요	1
II. 자격증 발급 신청	3
III. 제출 서류	6
IV. 유의사항	9

1.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영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법에서 정한 기간 보다 단축하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영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자격증 발급을 위한 서류(신청서, 건강진단서 등)를 미리 준비하여 자격증 발급 신청 후, 빠른 시일 내에 승인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영양보호사 자격시험 자격증 발급 신청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고객센터(1544-42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증 발급 신청서류 보내실 곳

(0504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국시원 구의역 별관
영양보호사 자격증 00지역 발급담당자 앞

I. 자격증 발급 개요

1. 자격증 발급업무 개시일

발급 일정	대상자
'24. 1. 1.(월) 부터	가. 2023년도 이전 영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자격을 갖추고 합격한 자
	나. 2024년도 영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 1) 교육과정 개정 전 응시자격 합격자 - 이론강의·실기연습 교육과정을 2023. 12. 31. 이전 이수하고, 현장실습 교육과정은 2024.12.31.까지 유예하되 본인 시험일 전일까지 이수 완료한 자 2) 교육과정 개정 후 응시자격 합격자 - 2024. 1. 1. 이후 교육과정을 시작하고 본인 시험일 전일까지 모든 교육과정(이론강의·실기연습 및 현장실습)을 이수 완료한 자 ※ 재발급 업무는 관할 시·도 지자체에서 수행

2.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 일정

가. 시험일정

시험 구간	시험일정	시험일정 공개일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일정 공개일 ~ 시험일 7일 전까지)
1	2024.2.6.(화)~2024.3.29.(금)	2024.1.16.(화)	2024.1.16.(화)~2024.3.22.(금)
	[토요일 시험시행일] 2024.3.16.(토)		
2	2024.4.1.(월)~2024.4.23.(화)	2024.3.4.(월)	2024.3.4.(월)~2024.4.16.(화)
	[토요일 시험시행일] 2024.4.20.(토)		
3	2024.5.2.(목)~2024.5.31.(금)	2024.4.1.(월)	2024.4.1.(월)~2024.5.24.(금)
	[토요일 시험시행일] 2024.5.25.(토)		
4	2024.6.3.(월)~2024.6.21.(금)	2024.5.2.(목)	2024.5.2.(목)~2024.6.14.(금)
	[토요일 시험시행일] 2024.6.15.(토)		
5	2024.7.1.(월)~2024.7.19.(금)	2024.6.3.(월)	2024.6.3.(월)~2024.7.12.(금)
	[토요일 시험시행일] 2024.7.13.(토)		
6	2024.8.1.(목)~2024.8.30.(금)	2024.7.1.(월)	2024.7.1.(월)~2024.8.23.(금)
	[토요일 시험시행일] 2024.8.10.(토)		
7	2024.9.2.(월)~2024.9.30.(월)	2024.8.1.(목)	2024.8.1.(목)~2024.9.23.(월)
	[토요일 시험시행일] 2024.9.28.(토)		
8	2024.10.1.(화)~2024.10.25.(금)	2024.9.2.(월)	2024.9.2.(월)~2024.10.18.(금)
	[토요일 시험시행일] 2024.10.19.(토)		
9	2024.11.1.(금)~2024.11.22.(금)	2024.10.1.(화)	2024.10.1.(화)~2024.11.15.(금)
10	2024.12.2.(월)~2024.12.20.(금)	2024.11.1.(금)	2024.11.1.(금)~2024.12.13.(금)

※ 교육과정 변경 전 이수자와 개정된 교육과정 이수자의 시험일정은 상이하며, 각 시험구간별 시험일정 공개일에 응시자격별 시험일자가 공지됨.

나. 합격자 발표 일정

- 오전/오후 시험시간에 관계없이 응시자 본인의 시험 다음날 10:00 이후에 발표(발표일이 주말 혹은 휴일인 경우 다음날 발표)

3. 지역별 발급 담당자

연번	지역	담당자	전화번호
1	서울	노하윤 주임	02-2251-6361
2		박은혜 주임	02-2251-6355
3	부산, 강원	신효선 주임	02-2251-6357
4	대구, 광주	최서정 주임	02-2251-6358
5	인천	이정원 주임	02-2251-6353
6	대전, 충북, 충남	김성국 주임	02-2251-6365
7	울산, 경북, 제주	조미진 주임	02-2251-6367
8	세종	오정은 차장	02-2251-6352
9	경기 남부	김정윤 대리	02-2251-6356
10		박혜진 주임	02-2251-6354
11	경기 북부	박정은 주임	02-2251-6368
12	전북	권옥선 주임	02-2251-6364
13	전남	손인숙 주임	02-2251-6363
14	경남	유별라 주임	02-2251-6362

※ 지역별 담당자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II. 자격증 발급 신청

1. 자격증 취득 절차

<p>개인/ 단체</p>	<p>자격시험 응시 접수 (합격 후) ▼ 자격증 발급 신청</p>	<p>■ 상시 응시원서 접수(개인, 단체) 후 자격시험 응시</p> <p>1) 요양보호사 홈페이지에서 자격증 발급 신청 등록 2) 필수서류 우편 발송 - 단체 : 자격증발급신청서, 건강진단서원본*, 경력증명서원본(해당자), 외국인비자서류(해당자), <u>국내 대학 졸업증명서 사본(외국인 D-10비자 소지자만)</u> - 개인 : 자격증발급신청서, 교육수료증명서원본, 건강진단서원본*, 자격(면허) 증사본(해당자), 경력증명서원본(해당자), 외국인비자서류(해당자), <u>국내 대학 졸업증명서 사본(외국인 D-10비자 소지자만)</u> <small>*2024. 1. 1. 이후 신청자부터 건강진단서원본은 신청접수일로부터 진단발급일 1개월(30일) 경과한 경우 불인정</small></p>																																								
<p>국시원</p>	<p>자격증 발급 승인 (요양TFT) (승인 후) ▼</p>	<p>1) (지역별 담당자) 우편물 필수서류 동봉여부 확인</p> <table border="1" data-bbox="475 875 1394 1070"> <thead> <tr> <th>구분</th> <th>자격증 발급신청서</th> <th>건강진단서 원본</th> <th>교육수료 증명서</th> <th>경력증명서 원본</th> <th>면허(자격) 증서 사본</th> <th>외국인 비자서류</th> <th>국내 대학 졸업증명서 사본</th> </tr> </thead> <tbody> <tr> <td>단체</td> <td>0 (단체)</td> <td>0</td> <td>X</td> <td>해당자만</td> <td>X</td> <td>해당자만</td> <td>해당자만</td> </tr> <tr> <td>개인</td> <td>0</td> <td>0</td> <td>0</td> <td>해당자만</td> <td>해당자만</td> <td>해당자만</td> <td>해당자만</td> </tr> </tbody> </table> <p>2) (지역별 담당자) 자격증 발급 신청서 바코드 입력 및 접수 처리 3) (결격사유조회 담당자) 결격사유조회 후 결과 입력 4) (지역별 담당자) 제출된 필수서류 검정 후 서류 이상없음 처리</p> <table border="1" data-bbox="539 1200 1394 1688"> <thead> <tr> <th>검정 서류</th> <th>검정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자격증 발급 신청서</td> <td>응시자격, 교육수료정보 등</td> </tr> <tr> <td>건강진단서 원본</td> <td>성명·생년월일, 검사항목, 진단내용, 진단일, 발급일, 의료기관명, 의사 성명·면허번호 등</td> </tr> <tr> <td>(단체)교육수료증명서 업로드 (개인)교육수료증명서 원본</td> <td>신청서 기재 사항과 일치 여부, 교육기관 직인, 교육수료기간, 교육과정 진행 순서(이론→실기→실습), 현장실습교육 기관명, 지역별 현장실습기준 부합 등</td> </tr> <tr> <td>경력증명서 원본(해당자)</td> <td>근무기간, 근무시간, 업무 내용, 기관장 직인 등</td> </tr> <tr> <td>(단체)자격(면허)증 업로드(해당자) (개인)자격(면허)증 사본(해당자)</td> <td>자격(면허)증 종류, 적합 교육과정 수료 여부, 교육 과정 수강일 전 해당 자격(면허)증 발급여부 등</td> </tr> <tr> <td>외국인의 비자서류</td> <td>여권 사본 및 외국인신분증 제출 여부, 체류조건, 체류기간, 체류기한 등</td> </tr> <tr> <td>국내 대학 졸업증명서 사본</td> <td>성명·생년월일, 졸업일자 등</td> </tr> </tbody> </table> <p>5) (요양TFT장) 자격증 발급 승인 처리(영업일 기준 접수일 10일 이내 발급)</p>	구분	자격증 발급신청서	건강진단서 원본	교육수료 증명서	경력증명서 원본	면허(자격) 증서 사본	외국인 비자서류	국내 대학 졸업증명서 사본	단체	0 (단체)	0	X	해당자만	X	해당자만	해당자만	개인	0	0	0	해당자만	해당자만	해당자만	해당자만	검정 서류	검정 내용	자격증 발급 신청서	응시자격, 교육수료정보 등	건강진단서 원본	성명·생년월일, 검사항목, 진단내용, 진단일, 발급일, 의료기관명, 의사 성명·면허번호 등	(단체)교육수료증명서 업로드 (개인)교육수료증명서 원본	신청서 기재 사항과 일치 여부, 교육기관 직인, 교육수료기간, 교육과정 진행 순서(이론→실기→실습), 현장실습교육 기관명, 지역별 현장실습기준 부합 등	경력증명서 원본(해당자)	근무기간, 근무시간, 업무 내용, 기관장 직인 등	(단체)자격(면허)증 업로드(해당자) (개인)자격(면허)증 사본(해당자)	자격(면허)증 종류, 적합 교육과정 수료 여부, 교육 과정 수강일 전 해당 자격(면허)증 발급여부 등	외국인의 비자서류	여권 사본 및 외국인신분증 제출 여부, 체류조건, 체류기간, 체류기한 등	국내 대학 졸업증명서 사본	성명·생년월일, 졸업일자 등
구분	자격증 발급신청서	건강진단서 원본	교육수료 증명서	경력증명서 원본	면허(자격) 증서 사본	외국인 비자서류	국내 대학 졸업증명서 사본																																			
단체	0 (단체)	0	X	해당자만	X	해당자만	해당자만																																			
개인	0	0	0	해당자만	해당자만	해당자만	해당자만																																			
검정 서류	검정 내용																																									
자격증 발급 신청서	응시자격, 교육수료정보 등																																									
건강진단서 원본	성명·생년월일, 검사항목, 진단내용, 진단일, 발급일, 의료기관명, 의사 성명·면허번호 등																																									
(단체)교육수료증명서 업로드 (개인)교육수료증명서 원본	신청서 기재 사항과 일치 여부, 교육기관 직인, 교육수료기간, 교육과정 진행 순서(이론→실기→실습), 현장실습교육 기관명, 지역별 현장실습기준 부합 등																																									
경력증명서 원본(해당자)	근무기간, 근무시간, 업무 내용, 기관장 직인 등																																									
(단체)자격(면허)증 업로드(해당자) (개인)자격(면허)증 사본(해당자)	자격(면허)증 종류, 적합 교육과정 수료 여부, 교육 과정 수강일 전 해당 자격(면허)증 발급여부 등																																									
외국인의 비자서류	여권 사본 및 외국인신분증 제출 여부, 체류조건, 체류기간, 체류기한 등																																									
국내 대학 졸업증명서 사본	성명·생년월일, 졸업일자 등																																									
<p>개인/ 단체</p>	<p>자격증 출력</p>	<p>■ 요양보호사 교육원 또는 개인 직접 출력 가능 - 자격증 출력횟수 1회, 자격증 발급 승인 후 14일 이내 출력 * 단, 컴퓨터 및 네트워크 문제, 자격증 발급 시스템 오류,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최초 자격증 출력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자에 한해 추가로 출력 가능하도록 승인함</p> <table border="1" data-bbox="555 1939 1394 2033"> <thead> <tr> <th>구분</th> <th>세부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출력기한연장</td> <td>신청일로부터 3일 까지 연장 가능</td> </tr> <tr> <td>재출력수 추가</td> <td>재출력 사유 지역담당자 확인 후 추가 가능</td> </tr> </tbody> </table>	구분	세부내용	출력기한연장	신청일로부터 3일 까지 연장 가능	재출력수 추가	재출력 사유 지역담당자 확인 후 추가 가능																																		
구분	세부내용																																									
출력기한연장	신청일로부터 3일 까지 연장 가능																																									
재출력수 추가	재출력 사유 지역담당자 확인 후 추가 가능																																									

2. 단체/개인 발급 신청 절차

가. 단체 신청 절차

- 1) 홈페이지 기관 로그인 및 자격증 발급 신청 홈페이지 접속
- 2) 자격증 발급 응시자격 선택
- 3) 자격증 발급 신청서 작성(엑셀 파일 업로드) 및 첨부서류 등록
 - 지정된 엑셀파일 양식 업로드(응시원서 접수 시 업로드한 양식과 동일)
- 4) 수수료 결제 및 자격증 발급 신청서 출력
- 5) 필수 서류 우편 발송

가) 발송 목록 : 자격증발급신청서, **건강진단서원본***,

경력증명서원본(해당자만), 외국인비자서류사본(해당자만),

국내 대학 졸업증명서 사본(외국인 D-10비자 소지자만)

*2024. 1. 1. 이후 신청자 부터 건강진단서원본은 신청접수일로부터 진단발급일 1개월(30일) 경과한 경우 불안정

나) 반드시 **자격증 발급 신청서**를 출력하여 필수제출서류와 함께 발송

다) 등기우편을 이용(일반우편 분실 시, 확인불가)

- 자격증 발급 신청서류 접수처

(0504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국시원

구의역 별관 요양보호사 자격증 OO지역 발급담당자 앞

6) 자격증 서류 검정 및 발급 승인

가) 서류 미비, 부적합 서류 등의 경우 자격증 발급 지연 및 반송처리

나) 결격사유 조회 및 서류검토가 완료되면 자격증 발급 승인 처리

7) 자격증 출력

- 자격증 직접 출력(1회, 14일 이내, 출력 전, 테스트 출력 후 본출력 가능)

나. 개인 신청 절차

- 1) 홈페이지 로그인 및 자격증 발급 신청 홈페이지 접속
- 2) 자격증 발급 응시자격 선택
- 3) 자격증 발급 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결제
- 4) 자격증 발급 신청서 출력

5) 필수 서류 우편 발송

- 가) 발송 목록 : 자격증발급신청서, **건강진단서원본***, 교육수료증명서원본, 자격(면허)증사본(해당자만), 경력증명서원본(해당자만), 외국인 비자서류사본(해당자만), 국내 대학 졸업증명서 사본(외국인 D-10비자 소지자만)

*2024. 1. 1. 이후 신청자 부터 건강진단서원본은 신청접수일로부터 진단발급일 1개월(30일) 경과한 경우 불인정

- 나) 반드시 **자격증 발급 신청서**를 출력하여 필수제출서류와 함께 발송
다) 등기우편을 이용(일반우편 분실 시, 확인불가)

- 자격증 발급 신청서류 접수처

(0504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국시원
구의역 별관 요양보호사 자격증 OO지역 발급담당자 앞

6) 자격증 서류 검정 및 발급 승인

- 가) 서류 미비, 부적합 서류 등의 경우 자격증 발급 지연 및 반송처리
나) 결격사유 조회 및 서류검토가 완료되면 자격증 발급 승인 처리

7) 자격증 출력

- 자격증 직접 출력(1회, 14일 이내, 출력 전, 테스트 출력 후 본출력 가능)

4.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증 발급 불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나. 결격사유 항목 별 세부내용

- 1) (제1호 및 제2호) ‘건강진단서’로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2) (제3호) 피성년후견인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민법 제9조)
- 3) (제4호 및 제5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자는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불가
- 4) (제6호) 요양보호사 자격 취소자

Ⅲ. 제출 서류

1. 필수제출 서류

구분	자격증 발급 신청서	건강진단서 원본	교육수료 증명서	자격(면허)증 사본	경력증명서 원본	외국인 비자서류 사본	국내 대학 졸업증명서 사본
단체	우편 제출	우편 제출	시스템 업로드 정보	시스템 업로드 정보 (해당자만)	우편 제출 (해당자만)	우편 제출 (해당자만)	우편 제출 (해당자만)
개인	우편 제출	우편 제출	우편 제출	우편 제출 (해당자만)	우편 제출 (해당자만)	우편 제출 (해당자만)	우편 제출 (해당자만)

가. 자격증 발급 신청서

- 1)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출력 후에 첨부서류 동봉하여 우편 발송함
- 2) 반드시 자격증 발급 신청서를 출력하여 필수제출서류와 함께 발송

나. 건강진단서 원본

- 1) 건강진단서 발급기관은 대학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의 제한이 없음
- 2) (신청자) 성명·생년월일, 검사항목, 진단내용, 진단일, 발급일, 의료기관명,

(의사) 성명·면허번호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불인정 (의사서명 또는 병원 직인 필수)

3) 진단 내용 필수 포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진단결과가 ‘소견, 사료, 추측’ 등 모호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4) 자격증 발급 신청접수일 기준 건강진단서 진단·발급일 1개월(30일) 경과한
경우 불인정(2024. 1. 1. 이후 접수부터)

다. 교육수료증명서 원본 우편 제출(개인) 또는 시스템 업로드(단체)

- 1) 개인신청은 우편 제출, 단체신청은 시스템 업로드
- 2) 자격증 발급 신청서 정보와 비교하여 인적사항 일치 확인
- 3) 교육수료사항(교육기관명, 교육기관직인, 교육수료사항, 수료기간 등) 확인
- 4) 요양보호사 이론·실기 교육일 이후 현장 실습교육 실시
 - 단, 이론·실기 교육이 오전에 종료되고, 같은 날 오후에 현장실습을 실시하였다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출석부 등을 문서24를 통해 공문과 함께 제출 필요
- 5) 관할 시·도의 요양보호사 현장실습교육 기준 부합 반드시 확인
 - 2023. 7. 1. 교육과정 정상화로 인한 현장 재가실습정보(방문요양, 주·야간보호서비스) 입력 유의(세부내용: 공지사항 게재문 ‘붙임 2. 요양보호사 현장실습 재개에 따른 자격증 발급 신청 유의사항 안내’ 참고)

라. 국가 자격(면허)증 사본 우편 제출(개인) 또는 시스템 업로드(단체)(해당자만)

- 1) 국가 자격(면허)소지자 교육대상인 경우 제출
- 2) 단체신청은 시스템 업로드, 개인신청은 우편 제출
- 3) 교육과정 수강일 전 해당 자격(면허)증 발급 (발급일 이전에 수강한 교육은 인정 불가)

마. 경력증명서 원본(해당자만)

- 1) 요양보호사 교육시간 감면대상 해당자인 경우 제출
- 2) 원본 여부, 근무기간, 근무시간, 업무 내용, 기관장 직인 필수기재
- 3) 근무기간(1년 이상)과 시간(1,200시간 이상) 동시 충족되어야 함

바. 외국인의 비자서류(여권 사본 + 외국인신분증 사본, 해당자만)

- 1) 외국인 결격사유조회(범죄경력조회)를 위한 비자서류 필수 제출
- 2) 여권 사본(사진, 한글성명 및 영문성명 확인), 외국인 신분증(외국인 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앞,뒷면 복사본
- 3) 여권과 외국인신분증 상 사진, 성명 등 신원정보 일치되어야 함
- 4) 체류기간 및 기한 내 자격증 발급 신청일 포함되어야 함

사) 국내 대학 졸업증명서 사본(외국인 중 D-10비자 소지자만)

- 1) 외국인 D-10 비자 소지자인 경우 제출
- 2) 비자서류와 비교 해당비자(D-10) 및 성명, 생년월일 확인
- 3) 졸업일이 교육시작일 이전인지 확인

2. 기타 자격증 발급 신청 유의사항

가. 자격 검정 결과 응시자격 미충족자는 반드시 관할 시·도에 응시자격에 대한 공문 확인 절차를 통해 교육과정 정상 수료 여부를 회신받아 발급 진행됨 (교육과정 수료 불인정 시 합격취소)

나. 외국인이 영문성명으로 자격증 출력을 원하는 경우, 한글성명과 영문성명이 모두 표기된 신분증을 첨부하여 개인정보정정 신청

다. 2010. 4. 26. 이전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개인이 자격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서류(수료자명부, 실습확인서) 검증 후 자격증 발급 가능

※ 2010. 4. 26. 이전 교육이수자가 자격증 발급 기신청자일 수 있기 때문에, 관할 시도에 공문을 통해 해당자의 기신청 여부 확인 필요

라. 자격증 발급 단체신청 시 자격증 발급 신청자가 같은 날 다른 기관에서 실습한 경우(오전 방문, 오후 주야간), 시스템에서는 동일기간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자격증 발급 개인신청 필요(해당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교육수료 증명서, 실습확인서, 출석부 등을 문서24 통하여 공문과 함께 제출)

마. 자격증 발급 신청 단체 접수 시 모든 서류는 개인별로 분류하여 첨부하여야 함

바. 교육기관이 폐업했을 경우, 개인으로 자격증 발급 신청 접수

V. 유의사항

1. 자격증 발급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반드시 아래 주소로 발송해야함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국시원 구의역 별관
요양보호사 자격증 OO지역 발급담당자 앞

※ 국시원 별관이 아닌 본관으로 발송 시 자격증 발급이 지연될 수 있으며, **발급 신청접수 기준일은 서류가 국시원 구의역 별관으로 도착하여 전산으로 접수 처리되는 날임**

2. 우편 발송 시, 등기우편을 이용하고 배송사고를 대비하여 교육기관 담당자는 반드시 등기번호를 별도 기재해 두어야 함

3. 우편물의 국시원 도착여부 확인은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등기번호 조회를 통한 확인 요망(국시원에서 전화를 통한 확인은 불가능함)

4. 자격증 발급 진행 현황은 요양보호사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5.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미비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자격증이 발급되며 미비서류를 일정기간 이상 미제출시 제출서류 일체가 반송됨

6. 자주 묻는 문의 및 기타 문의 사항 등 국시원 요양보호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관련 Q&A’ 게시되어있음